

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기간제 근로자(직업상담원) 채용 공고

고용노동부 소속 의정부지청 고용센터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(직업상담원)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,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24년 4월 9일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

I 채용부문

구분	채용분야(주요직무)	채용인원	비고
기간제 근로자	기간제 직업상담원(실업급여)	1명	- 근무지: 남양주고용센터 - [붙임1 직무설명서] 참조

II 응시자격

구분	주요내용
자격	· 제한 없음
학력·전공	· 무관
성별, 연령	· 제한 없음
기타	· 채용 즉시 근무 가능 자 · 인사 관련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(※ 기타 유의사항 참조)

III 전형절차 및 일정

○ 전형절차

서류 전형	⇒	면접 전형
▲ 응시자의 직무 적합성 여부 심사 ▲ 서류전형 기준, 근무희망지역 등을 고려하여 최종선발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		▲ 직업기초능력,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

○ 전형 일정

전형일정	일시	비고
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	2024. 4. 9.(화) ~ 4. 16.(화)	• 워크넷 e-채용마당에 접속하여 입사지원서 등 입력 * 4. 16.(화) 18:00 까지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2024. 4. 22.(월)	•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홈페이지 공고 예정
면접전형	2024. 4. 25.(목)	•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시 면접일시 및 장소 공고 * 적격자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면접전형 합격자 발표	2024. 4. 29.(월)	•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홈페이지 공고 예정

※ 상기 일정은 예산 편성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에정임

※ 최종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채용후 계약만료일 전에 조기 퇴직하는 등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예비합격자 순서대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여 결원의 잔여 근무기간만큼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

IV 우대사항

구분	우대사항						
자격사항 <서류전형>	○ 직업상담사 자격증 보유자						
경력사항 <서류전형>	○ 실업급여 및 직업상담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						
가점부여 <서류 및 면접전형>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가점항목</th> <th>가점 부여 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법정가점 (법률상 취업지원 대상자)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원자에게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10%(10점) 또는 5%(5점) 부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및 제31조 ▲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▲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및 제35조 ▲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 ▲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제22조 ▲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제24조 </td> </tr> <tr> <td>사회형평 가점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고용노동부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지침」에 따라 해당 지원자에게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%(3점) 부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 ▲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▲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▲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대상자 ▲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자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가점항목	가점 부여 내용	법정가점 (법률상 취업지원 대상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원자에게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10%(10점) 또는 5%(5점) 부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및 제31조 ▲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▲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및 제35조 ▲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 ▲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제22조 ▲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제24조 	사회형평 가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고용노동부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지침」에 따라 해당 지원자에게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%(3점) 부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 ▲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▲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▲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대상자 ▲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자
	가점항목	가점 부여 내용					
법정가점 (법률상 취업지원 대상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원자에게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10%(10점) 또는 5%(5점) 부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및 제31조 ▲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▲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및 제35조 ▲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 ▲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제22조 ▲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제24조 						
사회형평 가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고용노동부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지침」에 따라 해당 지원자에게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%(3점) 부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 ▲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▲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▲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대상자 ▲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자 						
※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,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							

	<p>(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) 또한,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%(사회형평 가점 포함시)를 초과할 수 없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최종합격자 결정 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가 있는 경우 다음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법정 가점을 받은 취업지원 대상자, ② 사회형평 가점을 받은 자, ③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따른 고령자, 준고령자 순, ④ 서류 및 면접전형 합산점수가 높은 자
--	--

* 우대사항 적용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

V 접수서류

제출 서류	제출 시기
○ 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 각 1부 (워크넷-e채용마당에 입력)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★e채용마당에서 원서접수 시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①개인정보활용동의서 ②장애인증명서(해당자) ③취업보호대상자(해당자) ④경력증명서 ⑤자격증을 스캔첨부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★</p>
○ 자격증 사본, 직무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(해당자) (e채용마당에 스캔 첨부)	
○ 장애인증명서 1부(해당자) (e채용마당에 스캔첨부) * 장애인 증명서, 복지카드, 상이군경회원증 등	
○ 가점부여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(e채용마당에 스캔첨부)	
○ 공정채용확인서 1부	최종합격자에 한해 제출 (제출시기는 별도 안내)

VI 근로조건

- 채용예정일: '24. 5. 2.(목)
- 근무기간: '24. 5. 2.(목) ~ 6. 30.(일)
- 보수수준: 월 2,010,580원
 - * 정액급식비(월 14만원), 가족수당(해당자) 및 법정수당 별도
 - * 4대 보험 가입(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)
- 근무시간: 주 5일(월~금), 1일 8시간(09:00~18:00, 휴게 1시간)
- 근무 장소: 의정부지청 남양주고용센터
- 주요 업무: 실업급여 업무 지원
-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“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”에 따름

VII 기타 유의사항

- 응시자가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(최종 채용 합격자,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)하게 됩니다.
-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, 보관 기간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파기합니다.
-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.
-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입사지원서 등은 사실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,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, 결격사유, 채용 후 계약기간 만료전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예비합격자 순서대로 추가합격자를 선발하여 결원의 잔여 근무기간만큼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.
-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.
-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자격·경력·우대사항 등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.
-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.

○ **결격사유**

- ▲ 피성년후견인
- ▲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▲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▲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▲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▲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▲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▲ 병역을 기피 중에 있는 자

○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고용관리과 최수빈 주무관(☎031-850-7717)